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

-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기관의 의무

- 1)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2)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3)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2026.01.01 기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이용요금			
			일반요금(15%)	9%감경	6%감경	기초수급자
가-1	30 분 이상	17,820	2,673	1,604	1,069	0
가-2	60 분 이상	25,860	3,879	2,327	1,552	0
가-3	90 분 이상	34,840	5,226	3,136	2,090	0
가-4	120 분 이상	44,350	6,653	3,992	2,661	0
가-5	150 분 이상	51,720	7,758	4,655	3,103	0
가-6	180 분 이상	58,230	8,735	5,241	3,494	0
가-7	210 분 이상	64,880	9,732	5,839	3,893	0
가-8	240 분 이상	71,570	10,736	6,441	4,294	0
나-1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91,040	13,656	8,194	5,462	0
나-2	40분 이상 60분 미만	72,840	10,926	6,556	4,370	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452,000	2,214,800	1,579,300	1,457,000	1,251,200	698,8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가.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 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가. 계약해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나.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늘푸른복지센터